

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 안내

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

□ 사업목적

-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의 신뢰성 제고 및 부실 방지
- 시설물 지진피해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
- 내진성능평가 기술수준 향상 및 합리적인 내진보강 유도

□ 지원 내용 및 대상

- (지원 내용)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*
 - * 평가결과에 대한 기준 부합 등 여부
 - (지원 대상) 건축물, 교량, 지중구조물(터널, 공동구 등) 中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물
 - 진단/점검 대상 中 내진성능평가를 별도로 수행한 시설물*
 - 진단/점검 대상 外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시설물
 - *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,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므로 지원 대상 제외
- ※ (지원 건수) 267건(물량 소진 시 까지 신청 접수 예정,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)
- ※ 내진성능평가 진행/예정 중인 시설물의 경우, 사전 신청 가능
(단, 연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여 검토 가능한 시설물에 한함.)

□ 신청방법 및 결과회신

- (신청방법) 신청서(붙임2)를 첨부하여 공문 신청
 - 제출물 :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및 증빙자료 (별도송부 가능)
 - 제출처 :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
(문의 : 황현성 직원, 055-771-4985, cheezefly@kistec.or.kr)
- (신청시기) ~ '19. 10. 31. 까지 상시접수
- (결과회신) 대상 선정 여부(공문접수 후), 검토 결과(검토완료 후 상시)

본 사업은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에서 수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신청자(관리주체)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.

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신청서

구 분	신 청 내 용													
관리주체명	(예시) 한국시설안전공단													
관리주체 담당자 / 연락처	(예시) 홍길동 과장 / 055-123-4567													
시설물명	(예시) 한국시설안전공단 본관													
시설물 종류	건축물 / 교량 / 지중구조물(터널, 공동구) 중 택1													
시설물안전법 ¹⁾ 에 따른 시설물 종별	1종 / 2종 / 3종 / 종외 시설물 중 택1													
내진성능평가 구역명 ²⁾	(예시) “한국시설안전공단 본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수행구역”													
내진성능평가 구역 발주형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시설물 종별</th><th style="width: 55%;">구 분</th><th style="width: 30%;">선 택</th></tr> <tr> <td rowspan="2">1·2·3종 시설물</td><td>내진성능평가 별도 수행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정밀안전진단/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수행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신 청 불 가</td></tr> <tr> <td rowspan="6">종외 시설물</td><td>내진성능평가 별도 수행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정밀안전진단/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수행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예시) ○</td></tr> </table>	시설물 종별	구 분	선 택	1·2·3종 시설물	내진성능평가 별도 수행		정밀안전진단/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수행	신 청 불 가	종외 시설물	내진성능평가 별도 수행		정밀안전진단/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수행	(예시) ○
시설물 종별	구 분	선 택												
1·2·3종 시설물	내진성능평가 별도 수행													
	정밀안전진단/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수행	신 청 불 가												
종외 시설물	내진성능평가 별도 수행													
	정밀안전진단/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수행	(예시) ○												
내진성능평가 구역 수행기간	(예시) 2018.01. ~ 2018.06.													

1) 시설물안전법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2) 계약서상 기재된 구역계약 명칭

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신청서

구 분	신 청 내 용		
관리주체명			
관리주체 담당자 / 연락처			
시설물명			
시설물 종류			
시설물안전법 ¹⁾ 에 따른 시설물 종별			
내진성능평가 용역명 ²⁾			
내진성능평가 용역 발주형태	시설물 종별	구 분	선 택
	1·2·3종 시설물	내진성능평가 별도 수행	
		정밀안전진단/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수행	신 청 불 가
	종외 시설물	내진성능평가 별도 수행	
		정밀안전진단/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수행	
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기간			

1) 시설물안전법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2) 계약서상 기재된 용역계약 명칭